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없는 당사자 이름: 법무법인 이름: 거리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변호사가 대리하는 당사자(이름):	법원용 정보 제공 전용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캘리포니아주 상급 법원, 소재 카운티: 거리 주소: 우편 주소: 시 및 우편번호: 지원 이름:	
자녀의 이름:	
처분심리 후 사실인정 및 명령 (복지 및 시설법 § 361 이하)	사건 번호: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1. 본 사건은 다음 신청에 따라 법원에 회부되었습니다.

☐ 최초 신청 ☐ 후속 신청 ☐ 보충 신청 ☐ 기타(자세히 기재):

제기일(날짜 기재):

2. 처분심리

- | | |
|---------------|------------------|
| a. 날짜: | e. 법정 속기사(성명): |
| b. 부서: | f. 법정 경위(성명): |
| c. 사법관(성명): | g. 통역사(성명 및 언어): |
| d. 법원 서기(성명): | |

h. 당사자(성명):	출석	변호사(성명):	출석	오늘 선임됨
(1) 자녀:	☐		☐	☐
(2) 모:	☐		☐	☐
(3) 부—추정상:	☐		☐	☐
(4) 부—생물학적:	☐		☐	☐
(5) 부—주장상:	☐		☐	☐
(6) 법적 후견인:	☐		☐	☐
(7) 미국 원주민 보호자:	☐		☐	☐
(8) 사실상 부모:	☐		☐	☐
(9) 카운티 기관 사회복지사:	☐		☐	☐
(10) 부족 대표자:	☐		☐	☐
(11) 기타(자세히 기재):	☐		☐	☐

i. 기타 법정 출석자:

- (1) 법원 선임 특별옹호자(CASA, 영어 약어로) 자원봉사자(이름):
- (2) 기타(성명):
- (3) 기타(성명):

3. 법원은 다음 문서를 읽고 검토한 후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 a. ☐ 사회복지사 보고서(작성일):
- (1) ☐ 후견 설정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보고서에는 복지 및 시설법 § 360(a), 361.5(g)에 규정된 평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2) ☐ 미국 원주민 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사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a) 기관이 다음 사항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증거(하나 선택):
- (i) ☐ 미국 원주민 가족의 해체를 방지하고 아동이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충분하고 시기적절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ii) ☐ 미국 원주민 가족의 해체를 방지하고 아동이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충분하고 시기적절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이름:

사건 번호: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3. a. (2) (b) 기관의 노력이 다음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증거(하나 선택):

- (i) ☐ 성공적이었음
(ii) ☐ 성공적이지 않았음

(c) 가족 재결합이 실패할 경우 부족 관습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적절한 영구 보호계획인지 여부에 대해, 복지 및 시설법 § 358.1(j)에 따라 해당 미국 원주민 부족과 협의하여 실시한 평가.

- b. ☐ CASA 자원봉사자 보고서(작성일):
c. ☐ 사건 계획서(작성일):
d. ☐ 기타(자세히 기재):
e. ☐ 기타(자세히 기재):
f. ☐ 미국 원주민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격 있는 전문가의 증언

전술한 사항과 제출된 모든 증거에 근거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명령합니다.

4. a. ☐ 심리의 일자, 시간 및 장소에 관한 통지는 법률상 요구되는 바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b. ☐ 심리에 출석하지 않은 만 10세 이상 아동의 경우: 아동은 복지 및 시설법 § 349(d)에 따라 심리에 출석할 권리에 대해 적절히 통지를 받았고 출석할 기회도 부여받았으며, 아동이 출석할 수 있도록 심리를 연기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없습니다.
5. ☐ 아동을 위해 법원 선임 특별옹호자가 선임됩니다.

6. 친자관계

- a. ☐ 법원은 심리에 출석한 아동의 부모와 그 밖의 적절한 관계인들에게 아동의 모든 추정상 부모 또는 주장된 부모의 신원 및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심리에 출석한, 부모라고 주장된 사람들 중 이전에 친자관계 진술서(양식 JV-505)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양식 JV-505가 교부되었으며,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b. ☐ 법원 서기는 복지 및 시설법 § 316.2에서 요구하는 통지를 다음 대상에게 하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1) 부모라고 주장된 사람(성명):
(2) 부모라고 주장된 사람(성명):
(3) 부모라고 주장된 사람(성명):

7. 미국 원주민 아동복지법(ICWA, 영어 약어로) 조회

- a. ☐ 법원은 사회복지사 또는 보호관찰관이, 아동이 충분한 연령에 이른 경우 해당 아동과, 그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 및 다음 친족들에게: 해당 아동이 미국 원주민임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였음을 인정합니다.
b. ☐ 법원은 기록상, 충분한 연령에 이른 경우 해당 아동과, 그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 해당 법적 절차의 모든 참여자 및 다음 친족들에게: 해당 아동이 미국 원주민임을 시사하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c. ☐ 당사자들은 해당 아동이 미국 원주민임을 시사하는 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 법원에 알리도록 지시받았습니다.
d. ☐ 법원의 판단:
(1) ☐ 해당 아동이 미국 원주민임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기관은 해당 아동이 미국 원주민인지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조회 노력을 법원에 보고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조사 의무를 부담합니다.
(2) ☐ 해당 아동이 미국 원주민임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a) 기관은 해당 아동이 구성원 또는 시민일 가능성이 있거나, 구성원 자격 또는 시민권 취득 자격이 있을 수 있는 모든 부족을 확인하고 협력하여 아동의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기록상 제출하였습니다.
(b) 통지는 법률상 요구되는 바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c) 법원은 기록상 해당 아동이 미국 원주민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아동을 미국 원주민으로 간주합니다.
e. ☐ 법원은 해당 아동이 미국 원주민이며, 미국 원주민 아동복지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합니다. 해당 아동은 다음 부족의 구성원 또는 시민이거나, 부족 구성원이나 시민의 생물학적 자녀로서 해당 부족의 구성원 자격이나 시민권 취득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 기재):

자녀의 이름:

사건 번호: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고지 및 권리 포기

8. 법원은 다음 사람에게 아래 내용을 고지하고 설명했습니다.

- ☐ 모 ☐ 생물학적 부 ☐ 법적 후견인 ☐ 자녀
☐ 추정상 부 ☐ 주장상 부 ☐ 미국 원주민 보호자
☐ 기타(자세히 기재):

고지한 내용: 자기부죄거부특권을 행사할 권리, 신청인이 법원에 제출할 보고서 또는 문서를 작성한 사람들과 심리에서 증언하는 증인들을 대면 및 반대신문할 권리, 증인을 소환할 권리, 자신을 위하여 증거를 제출할 권리, 그리고 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과 각 부모·법적 후견인·미국 원주민 보호자가 출석하고 변호인의 대리를 받을 권리. 개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받을 권리가 있고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은 추후 비용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전제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9. 다음 사람은 ☐ 모 ☐ 생물학적 부 ☐ 법적 후견인 ☐ 자녀
 ☐ 추정상 부 ☐ 주장상 부 ☐ 미국 원주민 보호자
 ☐ 기타(자세히 기재):

쟁점에 대해 법원 재판을 받을 권리, 자기부죄거부특권을 행사할 권리, 불리한 증인을 대면하고 반대신문할 권리, 증인을 소환할 권리 및 자신을 위하여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포기하였습니다.

10. ☐ 형제자매 그룹

해당 아동과 아래 기재된 그 형제자매들은 형제자매 집단을 이루고 있으며, 그 집단 내 최소 한 명의 아동은 최초 분리 당시 만 3세 미만이었으며, 형제자매 집단의 모든 아동은 동시에 부모의 보호·양육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형제자매(성명):

- a.
b.
c.
d.
e.
f.

11. 다음 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처분을 명합니다(해당 항목에 표시하고 지정된 양식을 첨부하십시오).

- a. ☐ 처분 관련 첨부서류: 비공식 감독 여부와 관계없는 신청 기각(복지 및 시설법 § 360(b)) (양식 JV-416), 해당 문서는 첨부되어 있으며 본 문서의 일부로 편입됩니다.
- b. ☐ 처분 관련 첨부서류: 공식 감독하의 가정 내 배치(복지 및 시설법 § 361) (양식 JV-417), 해당 문서는 첨부되어 있으며 본 문서의 일부로 편입됩니다.
- c. ☐ 처분 관련 첨부서류: 후견인 선임(복지 및 시설법 § 360(a)) (양식 JV-418), 해당 문서는 첨부되어 있으며 본 문서의 일부로 편입됩니다.
- d. ☐ 처분 관련 첨부서류: 양육 부모로부터의 분리—기존 비양육 부모에게 배치(복지 및 시설법 §§ 361, 361.2) (양식 JV-420), 해당 문서는 첨부되어 있으며 본 문서의 일부로 편입됩니다.
- e. ☐ 처분 관련 첨부서류: 양육 부모로부터의 분리—부모가 아닌 사람에게 배치(복지 및 시설법 §§ 361, 361.2) (양식 JV-421), 해당 문서는 첨부되어 있으며 본 문서의 일부로 편입됩니다.

12. 복지 및 시설법 제388조에 따른 아동의 권리와, 적절하고 필요한 양식의 제공을 포함한 복지 및 시설법 제388조에 따른 신청 제기 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아동에게 안내하였습니다.

- a. ☐ 만 12세 미만 아동의 경우, 해당 아동의 담당 변호사 또는 소송후견인을 통해 고지함
- b. ☐ 심리에 출석한 만 12세 이상 아동의 경우, 공식 기록상 및 서면으로 아동 안내서—법원 명령 변경 신청(양식 JV-185) 사본을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고지함
- c. ☐ 심리에 출석하지 않은 만 12세 이상 아동의 경우, 서면으로 아동 안내서—법원 명령 변경 신청(양식 JV-185) 사본을 우송하는 방식으로 고지함

자녀의 이름:

사건 번호: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13. ☐ 아동과의 접촉은 다음 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명합니다(해당 항목에 표시하고 지정된 양식을 첨부하십시오).
- a. ☐ 면접교섭 관련 첨부서류: 부모, 법적 후견인, 미국 원주민 보호자, 기타 주요 관계인(양식 JV-400).
- b. ☐ 면접교섭 관련 첨부서류: 형제자매(양식 JV-401).
- c. ☐ 면접교섭 관련 첨부서류: 조부모(양식 JV-402).
14. 복지 및 시설법 제16010조에 따라 요구되는 아동의 의료, 치과, 정신건강 및 교육 관련 정보는 다음 사람이 제공하였습니다.
- ☐ 모 ☐ 생물학적 부 ☐ 법적 후견인 ☐ 추정상 부
- ☐ 주장상 부 ☐ 미국 원주민 보호자 ☐ 기타(자세히 기재):
15. 본 명령과 상충하지 않는 이전의 모든 명령은 계속 유효합니다.
16. ☐ 기타 사실인정 및 명령
- a. ☐ 첨부서류 참조.
- b. ☐ (기재 요망):
17. ☐ 다음 심리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기일:	시간:	부서:	호실:
-------	-----	-----	-----

- a. ☐ 가정 내 보호 상태 검토 심리(복지 및 시설법 § 364)
- b. ☐ 6개월 단위 영구보호계획 심리(복지 및 시설법 § 366.21(e))
- c. ☐ 선정 및 시행 심리(복지 및 시설법 § 366.26)
(또한 6개월 이내에 복지 및 시설법 제366.3조에 따른 상태 검토 심리 일정을 지정하십시오.)

심리기일:	시간:	부서:	호실:
-------	-----	-----	-----

- d. ☐ 영구보호계획 이후 심리(복지 및 시설법 § 366.3)
- e. ☐ 기타(자세히 기재):

18. ☐ 본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본 법원의 관할권은 종료됩니다. 선임된 모든 소송대리인은 더 이상의 대리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19. 첨부서류 페이지 수: _____

날짜:

사법관

안내사항

귀하는 이번 심리에서 내려진 명령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항소심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소 권리에 대하여 논의하려면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다음 심리에서 내려지는 결정 또한 항소심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심리에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 권리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심리에 불출석하였고 항소 권리에 대해 논의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